

# 2024년도 제4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4. 4. 3. 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김경숙(분과위원장 대행), 김춘식, 정경오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4-42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706건(안전번호 제2024-24670호~26375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4-24670호~24739호(순번 1번~70번) 방송사업자 등의 복제권, 전송권,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기기를 판매하는 게시물을 전송한 사안으로,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4-24740호~26375호(순번 71번 ~ 1706번)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출판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다만, 위 사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게시자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김경숙 분과위원장 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 제4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4-42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김경숙 분과위원장 대행: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박현주 전문위원: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내 민원 관련 부분 온라인 서비스제공자, 권리자, 저작물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여부에 대한 의견 및 기타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참석 위원 전원: 비식별 처리에 동의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저작물명 등과 관련한 부분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 3. 안건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박현주 전문위원: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사는 'OOOOOOO OOOO, OOOOOOOOOOOOOO OOOO, OOOO, OOOOO, OOOOO OOOOOOOO OOO' 등 임.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대행: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람.
  - 박현주 전문위원: 이번 심의안건은 일반인이 신고하거나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발견된 불법복제물에 대하여 보호원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OOO OOO O' 35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3,190건의 복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해당 이용자들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에 관한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 박현주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번~70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OOO OOOOOO’, ‘OO’ 등의 쇼핑 포털에서 ‘OO OOO’ 혹은 ‘O OOO’라는 중국산 불법 스트리밍 기기를 판매하고 있는 사안으로 총 94건임.

- 박현주 전문위원: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박현주 전문위원: 순번 1번~70번은 방송사업자 등의 복제권, 전송권,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기기를 판매하는 게시물을 전송한 사안으로,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 A 위원: 무료로 콘텐츠 이용이 가능한가.
  
- 박현주 전문위원: 해당 기기를 이용하면 무료로 국내 드라마뿐만 아니라 한국 TV 채널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다시보기 메뉴에서 전 세계 영화 및 영상저작물을 시청할 수 있음.
  
- B 위원: 해당 기기는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 박현주 전문위원: 운영자가 해외 여러 서버에 콘텐츠를 분산하여 저

장한 후 실시간으로 가장 적합한 서버를 찾아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김경숙 분과위원장 대행: 서버 추적은 가능한가.
- B 위원: 서버가 많이 분산되어 추적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서버를 추적하기에 어려울 것 같음.
- 박현주 전문위원: 보호원 과학수사지원부에서 해당 기기에 대해 작성한 분석 보고서를 보면, 해당 기기의 포트 등을 변형하여 제작하였기 때문에 기기 분석 방법으로는 서버 추적이 어렵다고 함.
- A 위원: 기기의 가격이 얼마인가.
- 김경숙 분과위원장 대행: 기기의 가격이 다양하고, 고가의 경우 70만원에 판매가 되기도 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대행: 위원님들께서는 순번 1번~70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가결 의견임.
- 김경숙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순번 1번~70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박현주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 순번 71번~1706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 수는 3,096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영화 '아이리시 위시'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790번은 영화 '아이리시 위시'는 2024. 3. 15. 부터 넷플릭스에서 방영 중이며, 웹하드에서 93분 전체분량을 380캐시에 판매중인 사안임.

(응용프로그램 'Adobe illustrator CC 2024'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696번은 응용프로그램 'Adobe illustrator CC 2024'는 어도비 홈페이지에서 월 30,800원에 구독 가능한 제품이며, 웹하드에서 320포인트로 판매 중인 사안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박현주 전문위원: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출판물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참석 위원 전원: 검토 의견에 동의함. 가결 의견임.
- 김경숙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순번 71번~1706번은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4-24670호~26375호(순번 1번~1706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4. 폐회 선언

- 김경숙 분과위원장 대행이 제4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4년 제4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4. 17.

